

# 장기간 요양 중 발견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최초 재해 당시의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제공 : 근로복지공단)

## 판결요지

장기간 요양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능성의 희박, 요양 종결 중용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에서의 무리한 행동 등이 겹쳐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최초 재해 당시의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 【판례내용】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1996. 10. 18. 선고 95구35663 판결
- 【사 건 명】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8586, 1992. 5. 12. 선  
고 91누10466 판결
- 【당 사 자】 원 고 유○○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피고가 199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  
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3, 4, 5, 6, 을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고,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은 1989. 4. 21. 소외 ○○○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목공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인천 남구 연수동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가, 1989. 6. 15. 사고를 당하여 신좌상(脛挫傷), 왼쪽 대퇴부혈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로써 인천에 있는 중앙 길병원,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 그런데 위 이○○은 1995. 3. 18. 19:00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소고리에 있는 선산에 올라 갔다가 내려 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예산읍에 있는 예산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5. 4. 3.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5. 12. 위 망인의 사망 원인과 최초 재해 당시의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그리고 업무와 재해인 질병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3, 을 제3,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위 망인은 위 사고 전까지는 비교적 건강하였는데, 위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계속 요양 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왼쪽 대퇴부, 서혜부 연조직의 염증과 혈뇨 증세가 자주 발생하고 전신적인 부종 증세 및 만성적 두통이 남아 있었으며, 위 치료를 받던 도중 고혈압 증세가 발견되어 중앙병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단 및 치료도 함께 받아 왔다.

(2) 그러던 중 약 5년 9개월 동안의 장기간의 요양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위 망인은 1995. 3. 15. 경 산업재활원 주치의로부터 요양 종결을 권유받았다. 이에 만 63세에 이른 위 망인은 더 이상의 치료 가망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도 종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선산과 친척이 있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소고리에 있는 야산을 올라 갔다 내려 오던 중 쓰러져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하기 전에는 비교적 건강하였고, 한편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상해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

인데, 위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요양치료를 받아 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까지 완치되지 아니한 채 대퇴부 등의 염증, 혈뇨, 두통,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왔는바, 위 망인은 사건 재해로 부상을 입고 장기간의 요양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완치가능성의 회복, 요양 종결 종료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울러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선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의 무리한 행동이 겹쳐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비록 위 망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해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㉔**

## 직원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기다립니다.

- 제안은 사무분야, 기술분야, S/W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은 협회에 재직중인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의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종류	포상인원	연간최대 포상인원	금 액	등 급
최우수센타	1개 센타/1년	1개	500,000원	
최우수상	1명/1년	1명	500,000원	
우수상(A)	2명/분기별	8명	150,000원	80점 이상
공로상(B)	5명/분기별	20명	50,000원	60점 ~ 79점
장려상(C)	20명/분기별	80명	20,000원	45점 ~ 59점
노력상(D)	30명/분기별	120명	10,000원	30점 ~ 44점

- ※ 분기별, 반기별 포상인원은 연간 최대 포상인원 범위 내에서 조절될 수 있다.
- ※ 최우수상은 우수상 대상자 중에서 연 1회 선정하여 확정한다.
- ※ 최우수센타는 연간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센타로 확정한다. 단, 연간 12건 이상 제출된 센타에 한한다.
- ※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승급심사시 반영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지침 및 기타신청양식은 제안제도 시행지침(홈페이지 직원광장 직원게시판 게재)을 참고바랍니다.